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4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 : 남인순ㆍ김 윤ㆍ이건태

박홍배 • 박희승 • 장종태

이수진 • 오세희 • 김남희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,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. 반면, 건강보험의 경우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.

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본문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전단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③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 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환수금등의 고지, 독촉	제57조의2(환수금등의 고지, 독촉
및 체납처분 등) ①・② (생	및 체납처분 등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
	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
	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
	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
	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
	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
	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
	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
	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
	<u>으로 본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95조(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	제95조(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
체납처분) ①·② (생 략)	체납처분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③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
	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
	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
	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
	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

③ • ④ (생 략)

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 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 보험료 등의 체납내역, 압류 가 능한 재산의 종류, 압류 예정 사실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41 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 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 해산 등 긴급 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 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 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

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
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
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
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
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
된 것으로 본다.
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과 같음)
<u>⑥</u> 제5항
,
,
<u>⑦</u> <u>제5항</u>

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"한국자산관리공사"라 한다)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. 이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.

① 건강보험공단은 <u>제5항</u>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,
⑧